

충남대학교 대학원 축산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

[제정 2013.2.22.]

개정 2015. 3.12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축산학과(이하 “학과”라고 한다)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논문제출자격)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
제4조(논문제출자격시험) ①자격시험의 기본운영은 규정 제33조에 따른다.

②학위청구논문(이하 “논문”이라 한다)의 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자격시험은 전공에 대하여 실시한다.

④자격시험의 교과목은 학과에서 정하며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,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.

⑤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

⑥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은 해당분야의 전임교수를 위촉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채점위원은 따로 위촉할 수 있다.

⑦자격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제5조(외국어능력 기준) ①석사, 박사학위 졸업예정자는 소정의 영어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. 영어 성적은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TOEIC 또는 TEPS 등의 성적과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센터의 모의 TOEIC 점수만을 인정한다.

(개정 2015.3.12.)

②영어 성적의 합격기준은 TOEIC(모의 TOEIC포함) 석사 500점, 박사 600점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 적용한다. (개정 2015.3.12.)

③영어성적은 입학시 제출한 성적을 포함, 졸업논문 심사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제출한 공인점수를 인정한다.(개정 2015.3.12.)

제6조(논문지도위원회) ①박사학위과정은 3학기 재학 중에 3인의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②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.

③박사학위 과정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,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.

제7조(논문 계획 및 예비 발표) ①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은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에 예비발표를 해야 한다.

제8조(학술지게재 의무조건) ①석사과정의 경우 국내외 학회지에 1편 이상 주저자로서 투고하여야 한다.

②박사과정의 경우 SCI(E)급 논문을 1편이상 주저자로서 게재(게재 예정 포함)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세칙의 개정)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시행세칙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5. 3. 12.)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국어능력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해 종전 시행세칙을 따를 수 있다.